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18 - 26 - 346호

안 전 명      개인정보 유출사업자 법규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8. 5. 30.

###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5,0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 이 유

### I. 기초 사실

피신인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대하여 전화번호를 재판매하는 별정통신사업자(등록번호 제 호)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신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 의 매출액 현황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 균
매출액 (단위 : 백만원)				

※ 자료 출처 : 피신인이 제출한 자료

### II.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 )에서 10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피신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017. 12. 22.)가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KISA)에 접수됨에 따라, 피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현장조사(2018. 1. 16.)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행위 사실

###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침인은 전화번호 재판매 서비스 홈페이지( )'를 운영하면서 2018.

1. 16. 기준으로 64건의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 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

구 분	항 목	수집일	건수
회원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06. 11. 6. ~	64건

### 나. 개인정보 노출규모 및 경로

#### (1) 개인정보 노출규모

피침인이 전화번호 재판매 서비스 홈페이지( )'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0건이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에 노출되었다.

< 의 노출·정보 현황 >

구 분	유 출 항 목	건 수	중복제거
회원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10건	10명

#### (2) 노출경로

피침인의 전화서비스 가입절차는 홈페이지( )에서 2번의 인증(1차 휴대전화 인증, 2차 메일 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고, 가입신청서와 확약서 등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에 가입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 게시글을 등록하면 관리자의 승인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가입신청자가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가입신청서류를 첨부할 때 비밀글 여부를 신청자가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비밀글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권한이 없는 자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지 않고서도 해당 개인정보가 열람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 (3) 노출 신고

피신인은 2017. 11월말경 서울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방지 관련 점검을 받던 중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에 등록된 전화 번호서비스 가입신청글 목록에서 개인정보가 누구나 열람 가능한 것이 발견되어 2017. 12. 21. 개인정보보호포털(i-privacy.kr, KISA)에 신고하도록 안내받고 2017. 12. 22. 신고하였다.

###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전화서비스 가입신청자가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가입신청서류를 첨부할 때 비밀글 여부를 신청자가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밀글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권한이 없는 자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지 않고서도 해당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4. 4.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8. 4. 9. 의견을 제출하였다.

## III. 위법성 판단

###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5호)’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침인이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노출)되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 IV. 시정조치 명령

### 1. 시정명령

피침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이하 '과태료 부과 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 처리지침 제7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적용한다.

####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 처리지침 제9조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는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 처리지침 제8조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과실에 의한 경우,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위 두 가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사업규모가 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준금액에서 50%를 감경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업종별 기준에 따라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사업자(전자상거래, 방송통신업 등)

####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8①2호	1,000만원	없음	500만원	500만원
계				500만원

####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V. 결론

피침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3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침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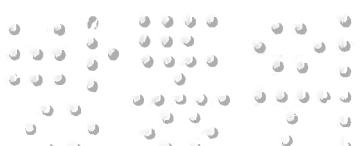
피침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침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침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위 원 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육



위 원 김 석 진



위 원 표 철 수



위 원 고 삼 석

